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019. 9. 16.~9. 23.

조례안상정

(조례 7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9-100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019-101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2019-102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2019-103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31
2019-104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7
2019-105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41
2019-106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43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00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주민대표기구로서의 실질적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2조·제3조)

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5조)

1) 20명 이상 30명 이하 ⇒ 20명 이상 50명 이하

다. 위원 자격을 정함(안 제6조)

라.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을 위촉함(안 제7조제2항)

마. 위원 자치역량 및 책임성을 강화함(안 제6조제3항, 제9조, 제13조)

1) 주민자치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 의무화

2) 사익추구 금지 등 해촉 사유 강화

3) 외부 감사 선임

바. 주민총회 및 자치계획 신설함(안 제15조, 제16조)

사.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제20조)

1)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2) 주민자치회 위원 단체보험 가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9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41,72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25.~8. 14.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반영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범적으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경우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읍면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5조에 따른 주민총회 운영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의 수립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2.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
3. 지방자치 활성화
4. 주민 참여 보장

- 5. 자율적인 운영
- 6. 정치적 중립 유지

제5조(주민자치회의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은 제7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모집일 기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읍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읍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3. 읍면에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군의회 의원

③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의 위원을 위촉하려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개모집 계획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40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사업장,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30
-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별로 예비위원을 5명 이내로 함께 위촉해야 한다.
- ④ 군수는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비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해당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⑤ 군수는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 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군수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자치회장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②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월 1회

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치회장 또는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주민자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 ② 주민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주민자치회의 운영
 - 2. 제16조에 따른 자치계획안
 - 3.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 4. 그 밖에 지역 현안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주민총회는 위원 수의 3배수 이상의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④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 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
 - 2. 임시회의: 주민자치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주민총회는 출석한 사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1개월 전까지 심의 안건 등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의 심의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주민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⑨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결 결과 및 회

의록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제16조(자치계획의 수립 등)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치계획(이하 “자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의 운영 계획
 2. 마을 발전 및 활성화
 3. 그 밖에 주민참여에 관하여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자치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총회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총회를 개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군수는 자치계획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자치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에 알려야 한다.
- ⑤ 주민자치회는 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사무소 게시판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자치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제18조(운영 지원)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공간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군수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20조(보험 가입)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직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등)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된다.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제12조 위원의 대우

나. 제15조 주민총회

다. 제18조 운영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1) 2019년도 예산 : 위원 수당 41,720천원

3. 미첨부 사유

가. 주민자치회 총회 개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

4. 작성자

행정과장 곽 승 욱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0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내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범위 확대(안 제24조제3항)

1)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관내 기업

나.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근거 신설(안 제24조의3)

1)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 임차료 일부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45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6.~8. 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

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성별구분항목 신설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를 “관내 기업에서”로 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산업·농공단지 내 고용 증대를 위하여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② (생략) ③ 군수는 <u>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u>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u>관내 기업에서</u>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4조의3(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u>산업·농공단지 내 고용 증대를 위하여 산업·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서 운영하는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7조(시행규칙) <u>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안 제24조제3항, 제24조의3)

- 1) 관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확대
- 2)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신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455,000	526,000	526,000	526,000	526,000	2,559,000
세출	기숙사 임차료 지원	322,000	322,000	322,000	322,000	322,000	1,610,000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133,000	204,000	204,000	204,000	204,000	949,000

3. 관련 의견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장려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인구 증가 및 기업의 고용안정화 도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 10개사 × 1,700천원 × 12개월 = 204,000천원

2)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확대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김성윤

거창군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0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박물관자료 구입·기증·관리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박물관을 건전하게 운영함으로써 군의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박물관 위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정함(안 제2조~제4조)

다. 박물관자료 구입 기준을 정함(안 제5조)

- 1) 박물관자료 구입계획 수립, 공개구입 원칙
- 2) 수집자료 화상공개 원칙

라. 박물관자료 기증·기탁을 정함(안 제6조)

- 1) 무상기증 원칙, 기증자에게 기증증서 발급
- 2) 기증자에게 예우차원에서 감사패 전달

마. 박물관자료 점검 및 보고를 정함(안 제7조)

바. 차별조항 삭제 정비함(현행 제10조·제11조)

- 1)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제한
- 2) 정신질환자 입장 제한

사. 법령 재기재 사항 등 삭제 정비

- 1) 박물관 업무(현행 제5조)
- 2) 배상(현행 제12조)
- 3) 운영위원회 법률 명시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4.~8. 25.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박물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박물관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거창박물관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거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창읍 수남로 2181에 둔다.

제3조(개관 및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진열품을 공개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박물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박물관 게시판, 군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5조(박물관자료의 구입) ① 군수는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자료 구입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고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박물관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감정을 받아 구입한다.

③ 불법적인 박물관자료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자료는 화상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박물관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시,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를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박물관자료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기증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증증서를 발급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박물관자료 기증자에게 예우 차원에서 감사패를 전달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확보를 위해 유물 등을 기탁 받을 수 있다.

제7조(박물관자료 관리 및 보고)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의 카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고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소장 박물관자료를 점검하여야 하고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박물관자료 점검 현황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행위제한) ① 박물관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없이 진열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 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거창박물관 운영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에 근무하는 학예연구사가 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증 증 서

자료명:

성 명:

주 소:

귀하께서 귀중한 자료를 거창박물관에 기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창박물관에서는 귀하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박물관자료의 활용과 보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거 창 군 수

위 문구는 사안별 내용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박물관자료 카드

자료번호		분류번호		소장구분		현존여부	
명 칭	(한글)				수 량		
	(한자)						
	(영문)						
국적/시대							
재 질							
용도/기능							
크 기							
문양/장식				무게			
명 문	구분			내용			
발굴일자				출토지			
보존처리							
자료상태				전시순위			입수일자
입 수 처							
입수연유							
가 격			보험			문화재지정	
특 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	원판						
등록일자			기록자			입력자	
<p>사진</p>							

소장품 관리를 위하여 이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자료 대장

(앞면)

번호	자료명	수량	물질	시대	소장 연월일	소장 경위	출 처	크기 (센티미터)	구조·특징	참고사항
1										
2										
3										
4										
5										
6										
7										
8										
9										
10										
소계:				건		점	누 계:		건	점

(뒷면)

사진첨부란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4호서식]

박물관자료 증감 보고

구분	금속 金屬	옥석 玉石	토도 土陶	나무	지류 紙類	그 밖에	총계		
							금년	전년	증감
수량 (점)									

증감내역	
증감사유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19-103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거창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및 대상을 정함(안 제2조)

1)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2) 대상 : 주사무소의 소재와 회원의 주소가 거창군에 있는 스포츠클럽

나. 지원 사업을 정함(안 제3조)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다. 지원신청을 정함(안 제4조)

라. 지도·감독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150백만원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과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2.~7. 22.

나) 예고결과 :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붙임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
거창스포츠클럽 김진옥	<p>○ 입법예고안 제2조(스포츠 클럽 지원) 제2항 지원범위에 대한 내용</p> <p>- 이 조례의 목적은 공공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진흥법」의 스포츠 클럽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함</p> <p>- 지원 범위는 예산(경비), 공공체육시설 및 인적자원(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내용도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p>	<p>○ 스포츠클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2030 스포츠비전의 최우선 핵심사업으로</p> <p>○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p> <p>○ 법에서 지원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해 지원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의 의견을 반영함</p>	의견 반영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지원) ① 거창군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주사무소의 소재와 회원의 주소가 거창군에 있는 스포츠클럽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한 차례 이상 보고를 하게 하고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3조(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합계
세출	군비	150	150	150	150	150	750

나. 관련 의견

국가시책과 생활스포츠 저변확대, 엘리트스포츠 활로 개척 및 스포츠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스포츠클럽을 활성화 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2020년 기준)

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 : 150백만원

작성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 현 화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04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규정과 법령 재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 함

2. 주요내용

가. 상시고용인력센터 지원 사업 확대 신설(안 제6조)

- 1) 숙식비, 안전용품 제공
- 2)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나. 법령 재기재 사항, 사문화 규정, 용어 등 정비(조례 전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1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6.~8. 2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농업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작업 참여자”란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 작업에 참여한 사용자 및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이하 “농업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작업 참여자의 책무)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상시고용인력센터 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의 시설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 거창군 거창읍 시장1길 20
2. 농업근로자를 위한 숙박시설: 거창군 웅양면 화평길 6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인·구직 상담 및 신청서의 접수·처리

2. 관외 인력유치사업 상담 및 알선, 농작업 참여자 교육

3. 농작업 참여자를 위한 지원 사업

가. 숙식비, 출퇴근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등

나. 보험료, 안전용품 제공

다.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개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센터에서 지원하는 농작업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1. 사용자: 농가, 영농작목반, 농업법인, 농산물 선별장 등

2. 농업근로자

제8조(지원 신청) ① 제7조제1호의 사용주는 제6조제1항제3호의 지원을 받으려면 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는 농작업을 마친 후 센터에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상시고용센터 운영 및 농작업 참여자 지원
- 나. 관련조문 : 제6조(센터의 기능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도비	36	36	36	36	36
군비		114	114	114	114	114	570
소계		150	150	150	150	150	750

3. 관련 의견

농촌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연중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9년 기준)

- 1. 협동조합 운영인건비 : 74백만원
- 2. 출퇴근운송사업비 : 29백만원
- 3. 관외인력유치 알선사업비 : 47백만원

작성자 : 경제교통과장 문재식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2019-105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기존에는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7. 1. 28.)으로 삭제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항이 기관위임사무로 됨에 따라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2. 주요 내용

가.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1.~7. 3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10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등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경작지에 발생한 농작물등 피해는 보상 제외

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액 변경함(안 제4조)

- 1) 현행 : 부상 또는 사망 시 최대 50만원
- 2) 변경 :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가) 상해 :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나) 사망 :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다. 그 밖에 법령 내용을 확인·재기재한 내용 삭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8.~8. 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기준·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산정기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피해보상액} = \text{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유사 농작물등에 대한 거창군 농산물 도매 시장 경락가격} \times \text{피해면적} \times \text{피해율}$

제3조(농작물등의 피해보상 우선 및 제외 대상) ① 군수는 농작물등 피해 보상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70세 이상인 사람
4. 그 밖에 영세한 농가 등 군수가 우선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작지에서 발생한 농작물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인명피해 보상액)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1.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2.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제5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의 적용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2조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제4조(인명피해 보상액)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의 피해보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1. 상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2.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지원 예산은 15백만원(상해 5, 사망 10) 정도로서 연 5천만원 이하에 해당

4. 작 성 자

환경과장 이덕기